



협성휴포레·진영 입주자 모집공고(안)



2014년 12월 17일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년 12월 17일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2012.07.24.개정)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김해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포함)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김해시 1년 이상 거주 신청자가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1년 미만 김해시 및 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5항에 의거(2012.02.27.신설)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및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당첨자 중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시 1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분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합니다.(1층이라 함은 공급주택 중 최저 층을 말함)

■ 인터넷청약안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 뱅킹과 전자공인 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청약금을 미리 예치해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

•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의 영업시간 변경(09:30~16:30→09:00~16:00)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08:30~18:00→08:00~17:30)되었으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김해시)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에 의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은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에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권 전매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 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김해시청 **공동주택관리과-6152호(2014. 12. 16.)**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 156-2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지하4층, 지상20층 8개동 총 534세대(특별공급 166세대 포함) 및 부대시설.

■ 연 면 적 : 72,788.6022㎡

■ 실사용부지면적 : 22,985.40㎡

■ 공급대상(민영주택)

(단위:㎡,세대)

구분	아파트코드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저층 배정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포함)	계약면적			일반 (10%)	다자녀 가구 (10%)	신혼 부부 (10%)	노부모 부양 (3%)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주택	2014001395-01	62.6780	62.6780	19.2963	81.9743	39.5940	121.5683	38.3510	34	3	3	3	1	2
	2014001395-02	67.3726	67.3726	20.4403	87.8129	42.5595	130.3724	41.2235	224	22	22	22	6	14
	2014001395-03	68.4567A	68.4567	20.9804	89.4371	43.2444	132.6815	41.8868	22	2	2	2	-	2
	2014001395-04	68.3988B	68.3988	20.9761	89.3749	43.2077	132.5826	41.8514	57	5	5	5	1	3
	2014001395-05	70.0627	70.0627	21.9153	91.9780	44.2589	136.2369	42.8695	121	12	12	12	3	8
	2014001395-06	76.6944	76.6944	23.1010	99.7954	48.4481	148.2435	46.9273	76	7	7	7	2	4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원, VAT 포함)

주택형	동별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5% ※천원단위올림	중도금 (60%)						잔금 (계약금 중도금 제외한 분양금액)	
				대지비	건축비	계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015.05.06	2015.08.06	2015.12.06	2016.03.06	2016.07.06	2016.10.06	입주지정일	
62.6780	108동	2층	1	25,881,087	148,408,913	174,290,000	8,720,000	17,429,000	17,429,000	17,429,000	17,429,000	17,429,000	17,429,000	17,429,000	60,996,000
		3~4층	2	25,881,087	151,408,913	177,290,000	8,870,000	17,729,000	17,729,000	17,729,000	17,729,000	17,729,000	17,729,000	17,729,000	62,046,000
		기준층	14	25,881,087	154,408,913	180,290,000	9,020,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63,096,000
	102동	1층	1	25,881,087	139,408,913	165,290,000	8,270,000	16,529,000	16,529,000	16,529,000	16,529,000	16,529,000	16,529,000	16,529,000	57,846,000
		2층	1	25,881,087	144,408,913	170,290,000	8,520,000	17,029,000	17,029,000	17,029,000	17,029,000	17,029,000	17,029,000	17,029,000	59,596,000
		3~4층	2	25,881,087	149,408,913	175,290,000	8,770,000	17,529,000	17,529,000	17,529,000	17,529,000	17,529,000	17,529,000	17,529,000	61,346,000
		기준층	13	25,881,087	154,408,913	180,290,000	9,020,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18,029,000	63,096,000
67.3726	102, 105, , 108동	1층	1	27,819,587	151,590,413	179,410,000	8,980,000	17,941,000	17,941,000	17,941,000	17,941,000	17,941,000	17,941,000	17,941,000	62,784,000
		2층	6	27,819,587	154,590,413	182,410,000	9,130,000	18,241,000	18,241,000	18,241,000	18,241,000	18,241,000	18,241,000	18,241,000	63,834,000
		3~4층	12	27,819,587	157,590,413	185,410,000	9,280,000	18,541,000	18,541,000	18,541,000	18,541,000	18,541,000	18,541,000	18,541,000	64,884,000
		기준층	94	27,819,587	160,590,413	188,410,000	9,430,000	18,841,000	18,841,000	18,841,000	18,841,000	18,841,000	18,841,000	18,841,000	65,934,000
	106, 107동	1층	2	27,819,587	155,580,413	183,400,000	9,17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18,340,000	64,190,000
		2층	6	27,819,587	158,580,413	186,400,000	9,320,000	18,640,000	18,640,000	18,640,000	18,640,000	18,640,000	18,640,000	18,640,000	65,240,000
		3~4층	12	27,819,587	161,580,413	189,400,000	9,47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18,940,000	66,290,000
		기준층	77	27,819,587	164,580,413	192,400,000	9,62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67,340,000
	104동	2층	2	27,819,587	154,580,413	182,400,000	9,120,000	18,240,000	18,240,000	18,240,000	18,240,000	18,240,000	18,240,000	18,240,000	63,840,000
		3~4층	4	27,819,587	159,580,413	187,400,000	9,370,000	18,740,000	18,740,000	18,740,000	18,740,000	18,740,000	18,740,000	18,740,000	65,590,000
		기준층	8	27,819,587	164,580,413	192,400,000	9,62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19,240,000	67,340,000

68.4567A	101동 5호	2층	1	28,267,214	155,492,786	183,760,000	9,190,000	18,376,000	18,376,000	18,376,000	18,376,000	18,376,000	18,376,000	64,314,000	
		3~4층	2	28,267,214	158,492,786	186,760,000	9,340,000	18,676,000	18,676,000	18,676,000	18,676,000	18,676,000	18,676,000	18,676,000	65,364,000
		기준층	4	28,267,214	161,492,786	189,760,000	9,490,000	18,976,000	18,976,000	18,976,000	18,976,000	18,976,000	18,976,000	18,976,000	66,414,000
	101동 1호	2층	1	28,267,214	159,552,786	187,820,000	9,400,000	18,782,000	18,782,000	18,782,000	18,782,000	18,782,000	18,782,000	18,782,000	65,728,000
		3~4층	2	28,267,214	162,552,786	190,820,000	9,550,000	19,082,000	19,082,000	19,082,000	19,082,000	19,082,000	19,082,000	19,082,000	66,778,000
		기준층	12	28,267,214	165,552,786	193,820,000	9,700,000	19,382,000	19,382,000	19,382,000	19,382,000	19,382,000	19,382,000	19,382,000	67,828,000
68.3988B	102, 106, 108동	1층	1	28,243,324	152,476,676	180,720,000	9,040,000	18,072,000	18,072,000	18,072,000	18,072,000	18,072,000	18,072,000	63,248,000	
		2층	3	28,243,324	155,476,676	183,720,000	9,190,000	18,372,000	18,372,000	18,372,000	18,372,000	18,372,000	18,372,000	64,298,000	
		3~4층	6	28,243,324	158,476,676	186,720,000	9,340,000	18,672,000	18,672,000	18,672,000	18,672,000	18,672,000	18,672,000	65,348,000	
		기준층	47	28,243,324	161,476,676	189,720,000	9,490,000	18,972,000	18,972,000	18,972,000	18,972,000	18,972,000	18,972,000	18,972,000	66,398,000
70.0627	101, 106, 108동	1층	1	28,930,387	162,539,613	191,470,000	9,580,000	19,147,000	19,147,000	19,147,000	19,147,000	19,147,000	19,147,000	67,008,000	
		2층	6	28,930,387	165,539,613	194,470,000	9,730,000	19,447,000	19,447,000	19,447,000	19,447,000	19,447,000	19,447,000	68,058,000	
		3~4층	12	28,930,387	168,539,613	197,470,000	9,880,000	19,747,000	19,747,000	19,747,000	19,747,000	19,747,000	19,747,000	69,108,000	
		기준층	69	28,930,387	171,539,613	200,470,000	10,030,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70,158,000
	102동	1층	1	28,930,387	156,539,613	185,470,000	9,280,000	18,547,000	18,547,000	18,547,000	18,547,000	18,547,000	18,547,000	18,547,000	64,908,000
		2층	2	28,930,387	161,539,613	190,470,000	9,530,000	19,047,000	19,047,000	19,047,000	19,047,000	19,047,000	19,047,000	19,047,000	66,658,000
		3~4층	4	28,930,387	166,539,613	195,470,000	9,780,000	19,547,000	19,547,000	19,547,000	19,547,000	19,547,000	19,547,000	19,547,000	68,408,000
		기준층	26	28,930,387	171,539,613	200,470,000	10,030,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20,047,000	70,158,000
76.6944	103동	2층	4	31,668,784	176,661,216	208,330,000	10,420,000	20,833,000	20,833,000	20,833,000	20,833,000	20,833,000	20,833,000	20,833,000	72,912,000
		3~4층	8	31,668,784	181,661,216	213,330,000	10,670,000	21,333,000	21,333,000	21,333,000	21,333,000	21,333,000	21,333,000	21,333,000	74,662,000
		기준층	64	31,668,784	186,661,216	218,330,000	10,920,000	21,833,000	21,833,000	21,833,000	21,833,000	21,833,000	21,833,000	21,833,000	76,412,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경상남도 김해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가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기준 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3%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입주예정일보다 실입주일이 당겨질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상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잔금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할 시 연체료가 부과됨.
-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입주 시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함.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당첨자가 분양 계약시 별도의 발코니 확장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며, 마감재 내역 및 품목은 신청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분양 안내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이며, 해당 동에 따라 층수는 다를 수 있음.(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총·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당 사업지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주택공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 85㎡이하 공급규모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자녀가구(구 3자녀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건설량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적극 지원 및 결혼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전용 85㎡이하 공급규모의 10%이내를 특별공급 함.
- 당 사업지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적용 주택으로 공급 주택형별 3%이내를 특별공급 함.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를 받아 동·호수를 추천하며, 추천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됨.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 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공급 품목
문	목재문(문짝,문틀,상부덧판,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목재도어(공문틀 포함)의 가틀, 발코니PVC내부창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바닥	강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 가구류일체(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수납장, 각종선반, 수전류(발코니, 세탁실)	바닥난방,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 선홍통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아트월,타일), 발코니벽도장, 발코니 전열교환기	석고보드(해당부위), 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등박스(우물천장), 반자돌림(몰딩포함), 발코니천정도장	천장틀위 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조명등기구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욕실	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 등), 수전류, 액세서리,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거울, 욕실헨, 바닥 및 벽타일, 욕실폰, 비데	조적, 방수, 미장, 전기배관/배선/설비배관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선반(주방상하부장등),벽타일, 수전류(수전),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3구쿡탑)	설비배관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m², 원, VAT포함)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62.6780	67.3726	68.4567A	68.3988B	70.0627	76.6944
각타입(104동 제외)	17,300,676	18,532,913	18,875,700	18,862,573	19,411,957	21,061,819
104동	-	19,757,903	-	-	-	-

*상기금액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선택품목을 제외한 분양가격은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과 발코니확장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마이너스옵션신청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추후 별도 안내문을 통해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 공사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의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관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품목 시공시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이너스옵션 계약세대는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발코니 확장 공사비(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함)

(단위 :m², 원, VAT포함)

주택형(주거전용면적)	62.6780	67.3726	68.4567A	68.3988B	70.0627	76.6944
발코니확장공사비	5,830,000	6,980,000	9,250,000	9,150,000	8,370,000	8,26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제46조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2008.10.29. 개정시행)
- 주택형별로 각 세대별 확장부위를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 각 주택형별로 당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부 발코니에 대한 확장공사가 서비스로 일괄시공(발코니 창호는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확장타입이 축소 조정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비용은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확장 세대의 기본품목을 차감한 가격이며, 발코니 샤시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 통지하지 아니함.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확장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금액	부산은행	113-2005-0363-04	(주)협성건설 김청룡

■ 플러스 옵션(추가 선택 품목)

- 플러스 옵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플러스 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플러스 옵션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 납부계좌 및 제품(제조사 및 모델명)에 관한 사항등은 견본주택(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품명	모델명	판매가(VAT포함)
시스템에어컨 (LG)	실내기2대	6+18평	3,300,000
	실내기3대	6+5+18평	4,800,000
	실내기4대	6+5+5+18평	6,600,000
가전제품	BIS냉장고(빌트인냉장고)	R-L712JCS	5,000,000
		R-L692JYS	6,500,000
	김치냉장고	R-D222WW	1,400,000

■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미선택시 적용되는 벽체매립 냉매배관의 제외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벽체매립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나 벽걸이 에어컨용 전기 콘센트도 시공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는 스탠드형 및 기타 타종의 에어컨을 연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제조사의 사정,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변경 설치 될 수 있음.
-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으로 설치 됨.
- 실외기실 쪽의 냉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공급계약과 별도 계약사항이며 납부일정 및 금액은 선택품목 계약서에 명시됨.
- 시스템에어컨은 계약 후 해지가 불가능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기타 플러스 옵션관련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계약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자와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할 수 있음.
-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아래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플러스 옵션 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아파트 및 확장계약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아래의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플러스옵션 계좌	부산은행	113-2005-0366-03	㈜협성건설 김청룡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신청세대 공통사항[일반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신청 및 당첨자 선정일시·장소

구분	일자	시간	장소
특별공급 신청	2014.12.22(월)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2014.12.22(월)	16:00	

※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당첨자 선정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함. 다만, 동일 순위 경쟁 시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 중에 선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됨.

■ 신청방법 : 해당 청약신청 일시에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공고)유의사항

-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을 선정하며, 동·호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 (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4항의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 중 동·호수 배정업무를 추첨기관(전산관리지정기관)에서 수행하므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일시와 동·호수 배정결과 발표일시가 상이함.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 특별공급,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특별공급 공통자격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자(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는 제외함], 제6항, 제7항에 의한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전용면적 85㎡이하만 해당)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고, 신청하기 전까지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한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의한 특별공급(노부모 특별공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지역별/면적별 기준에 따라 각 주택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1순위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부부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자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 함.
- 당첨자 선정/공고와 관련하여 해당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첨자 선정/공고가 가능하나, 해당 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첨자 선정/공고할 계획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류심사가 지연되어 당첨자 선정 및 공고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하고,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 부적격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주택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됨.
- 본인이 특별공급간 중복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 미적용)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계약해제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제외)
- 청약시 무주택입증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 비치)로 대체하고 당첨자에 한하여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적격자를 선정함.
-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체결일 : 2015.01.06.(화) ~ 2015.01.08.(목)(3일간, 각 순위 정당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주택형 ㎡	62.6780	67.3726	68.4567	68.3988	70.0627	76.6944	계
일반 특별공급	3	22	2	5	12	7	5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22	2	5	12	7	51
신혼부부 특별공급	3	22	2	5	12	7	51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6	-	1	3	2	13
계	10	72	6	16	39	23	166

1) 일반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51세대 / 전용 85㎡이하세대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자. 단, 해당 기관장의 인정 서류를 받으신 대상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

- 청약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추첨에 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 51세대 / 전평형의 10% 이내)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민법상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세대주.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되며,(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재혼으로 성이 다른 3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해야 함.
- 한부모 가족지원법 개정(2012.04.12)으로 한부모 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별도의 배점을 부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35호를 준용함, 신청 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 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이상 ~ 10년미만	15	
		1년이상 ~ 5년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51세대 / 전용 85㎡이하 10% 이내)

구분	내용
공급 대상자격	<p>[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 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이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말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p> <p>※ 20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통계청 고시)</p> <p>- 단독별이: 3인이하 - 4,606,216원이하, 4인 - 5,102,802원이하, 5인 이상 - 5,357,446원 이하</p> <p>- 맞벌이: 3인이하 - 5,527,459원이하, 4인 - 6,123,362원이하, 5인 이상 - 6,428,935원 이하</p> <p>※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5인 이상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5,357,446원)+[1인당 평균소득(375,615원)*(N-5)] *N→6인 가구원수</p>
청약 순위	<p>-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p> <p>-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p> <p>* 청약순위의 출산은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p>
동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p>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p> <p>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p> <p>3. 미성년인 자녀수(태아포함)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p> <p>* 자녀수 산정방법</p> <p>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포함)한 자녀</p> <p>②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되고,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해당)도 포함</p>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자인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혼인신고 이전 출산한 자녀는 자녀수에서 제외됨.
- 입양의 경우 입주 전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공급계약)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공급계약)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 관련 자료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함)을 근무월수(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로 나눈 금액으로 함.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본인)의 직계존·비속 포함]을 포함하여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 수를 포함)

- 소득입증관련 제출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관리공단/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접수장소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320호]에 따름.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 :13세대 / 전평형 3% 이내)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 또는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잔여 물량 발생 시 김해시 1년 미만·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 신청자에게 공급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예) 세대주 무주택기간이 5년이고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 포함)의 무주택기간이 3년일 경우 무주택기간은 3년
- 기간 산정 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주택소유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제6호 미적용)

-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 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가정제를 적용하되, 동정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함.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정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 특별공급 청약신청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 청약가점기준표를 작성토록 함.(건본주택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5)특별공급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신청자격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특별공급 공통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1통 (용도: 주택공급 신청용)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미혼·이혼·사별,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경우) • 청약통장 가입(순위)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2you.com에서 발급) 단, 특별공급 대상자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일반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1통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복지카드 등 기타서류 불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배정기준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표시분, 3세대 이상 세대주 구성 청약자에 한함) • 입양 입증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관계 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 가족에 한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 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혼인신고일 확정, 본인 발급기준)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의와의 혼인입증서류 및 이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이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자녀가 미등재된 경우) • 소득증빙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 [상기 소득입증서류 참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기 특별공급 공통서류 외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한 자에 한함)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신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 신청자의 인장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 2005.7.1. [주민등록법시행규칙]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초본 1통 필요.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김해시 및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 국민, 외국 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을 한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을 충족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공급신청인 및 공급신청인의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되어 한 세대 에서 2주택 이상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중복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 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은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이후 사용가능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 시 1순위 청약제약을 받을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가능 함.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신청시 모두 가점제로 접수하고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 됨. • 본인 및 세대원이 2주택 이상 소유시 주택소유수에 따라 감점적용
	2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대상 없음
	3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해시·경상남도·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인 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소유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김해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울산광역시 거주자	부산광역시 거주자
전용면적 85㎡ 이하	200	250	300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의하여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분	순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영주택	1순위	2014. 12.23.(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17:30	* 일시 : 2014.12.31.(수)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홈페이지 (www.hshuefore.co.kr),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순위	2014. 12.24.(수)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국민은행 홈페이지)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인터넷 접수시간 - 08:00~17:30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정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우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3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 : 기업, 국민, 외환, 수협, 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주택규모를 선택한 이후에는 2년이 경과하여야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 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3개월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 면적으로만 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2012년 2월 27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사람중 1층 주택의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접수시 1층 희망을 선택해주시기 바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정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정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 각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정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전세대 추첨제로 신청자에게 공급함.(2013.5.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 4.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 가정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정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거주개시일 기재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4.12.17) 현재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도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가정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 인터넷 청약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2you.com),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여 사전에 익히고 필요한 사항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람.

2.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총점	84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감점점수(아래의 “감점 산정기준” 참고)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 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p>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 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 부여한다.

4. 감점 산정 기준

감점항목			감점점수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제6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됨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12조 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 점으로 산정됨.

5.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7)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 등본: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주택(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①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②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 인정기간을 산정한다.
 - 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으로 한다.)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분	국민은행 (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3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2you.com) 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3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신청접수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 주택형	10만원	· 인터넷 청약 시(08:00~17:30) : 인터넷뱅킹계좌에서 자동 출금(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만원 이상 유지)
		· 영업점 방문 청약 시(09:00~16:00)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인터넷뱅킹) 참가은행: 기업, 국민, 외환, 수협, NH농협, 우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하나, 신한은행.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2015.01.02]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청약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천으로 선정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공개추첨 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 배정함.(동·호 배정 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대상자의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 법률에 의거 공급함.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천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

	<p>정하고, 3순위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단, 당첨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이 신청 시 1층 우선배정을 신청한 경우 다른 청약자보다 1층(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우선 배정함. 1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이 배정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당사로 연락처를 통보한 예비당첨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부동산→청약→당첨확인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 에 접속→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4.12.31 ~ 2015.1.9.(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 코드 : 9→1→3]	전자금융공동망 (1369) [서비스 코드 : 5#]
	이용기간	2014.12.31. ~ 2015.1.9.(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4.12.31.(수) 10: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중복 청약 및 이중당첨자 처리기준

- 일반공급의 경우 청약신청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 및 당첨 시 모두 무효 처리되고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단,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한 주택에 대하여 중복 청약이 가능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을 계약하여야 함)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정당당첨자) - 2015.01.06.(화) ~ 2015.01.08(목)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건본주택.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계약체결장소에서 수납은행 직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10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중도금,잔금	부산은행	113-2005-0362-08	(주)협성건설 김청룡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의 본·지점에서 무통장 입금(타행 입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사항
정당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 입금 확인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정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당첨 금지 등의 사유로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당첨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건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 12. 1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됨.
 - ①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청약가점항목을 허위·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 및 제22조제9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22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간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휘트니스센터 1개소,GX룸 1개소), 어린이집, 경로당, 근린생활시설등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입면(창호, 외벽, 지붕구조물 포함)이 인허가 도서와 달리 아파트 주동과 어울리도록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창호모양 및 크기, 외부 마감의 변경, 지붕재료, 모양, 디자인 등)
- 부대시설은 공사 중 현장 여건 및 사용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일부 평면 레이아웃, 시설물, 입면형태, 재료 마감 등이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에 대한 융자지원 안내(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

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여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 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중도금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14의 2」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입주개시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예정 일자 : 2017년 3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

- * 기 청약자격 전산수룩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룩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 당첨자로 선정(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 입주자모집실태 조사확인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 정당 당첨자 계약일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 인근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입주관련 유의사항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 인접한 도로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 본 아파트의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함.
-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에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마감재 보드,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람(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 *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이지만 공동주택 단지내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옵션관련 유의사항

-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분양 이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
-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제작, 배포된 홍보물,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함.
-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람.

-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샷시의 위치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재질이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실외기 그릴창 포함)의 내외부 색상은 입면 색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설계 및 기타 유의사항

-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완충 녹지, 경관녹지, 공원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시행사,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 상기 공급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상호 정산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 단지 동측 12m 계획도로는 약 13.6% 내외의 경사로 인하여 동절기 미끄러짐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 단지 진출입시 레벨차이로 인하여 동절기 미끄러짐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음.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추가공사요청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 102동, 103동, 104동 1,2,3호 라인, 108동 전면 옹벽설치로 저층세대의 경우 사생활침해 및 일조권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시 충분히 인지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이로 인하여 계약 이후 설계변경, 해약등의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 101동 하층부에 상가가 위치하여 소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101동, 102동 전면부 차량 출입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야간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 101동 남측 상가전용 주차장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소음, 분진, 야간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 108동 저층부의 경우 주민운동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 홍보물 및 단지배치도상에 표시된 단지 남측 계획도로의 경우 예정사항으로 입주시 미개통으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음.
- * 106동, 107동, 108동 저층부의 경우 단지 남측 계획도로 개통시 사생활 침해등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음.
- * 학생 수용은 진영대창초등학교, 진영금병초등학교, 진영중학교, 한얼중학교, 진영여자중학교등에 분산 배정될 수 있음.
- * 104동 북측 부지경계 구조물이 미관 개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변경시공 될 수 있음.(계약시 설계변경에 동의 하여함)
- * 조강도, 배치도등 홍보물에 표시된 단지 남측 도로는 미개설된 도시계획상 도로이며, 미개설시 옹벽이 설치됨. 계약시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람.
-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계약 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 김해시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토달디자인 심의를 받을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 인접 동 및 인접세대 및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

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 주동 저층부는 입면계획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 단지내 조경,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
-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분리쓰레기수거함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 단지 배치 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음.
-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본동의 입면 특화를 위해 설치한 벽면 돌출 구조물로 인하여 일조 및 조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현장 여건에 따라 지붕, 축벽, 출입구등의 디자인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표시) 규정

항 목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개수(필요시)
고기밀 창호	적용	KS F 2292에 의한 기밀성능 2등급 이상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보일러, 고효율전동기, 고효율펌프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제5조에 의한 안전 인증을 취득한 제품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의 조명기구는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적용
공용화장실 자동 정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정멸되는 스위치 설치(마이크로파 방식)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택지비산정 (금액단위 : 원)

감정평가액	감정평가기관
일금 일백오십억구천육백구십삼만육천원정(W15,096,936,000)	(주)가람감정평가법인
일금 일백사십구억삼천오백삼십사만팔천원정(W14,935,348,000)	한국감정원

■ **감리자 및 감리금액(금액단위 : 원, VAT별도)**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도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케이아이씨	(주)유일방재엔지니어링	
감리금액	₩952,643,000-	₩381,516,420(부가세포함)	₩9,090,910-	₩90,909,09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시행/시공/분양	(주)협성건설	605-86-03844
----------	---------	--------------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연대 보증사: 대한주택보증(주)**

• 분양보증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2312014-101-0005000	₩67,689,27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대한주택보증(주) 주택분양보증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보증사고의 정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홍오토, 발코니샤시,마이너스옵션 부위,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주)로 문의 바랍니다(051-602-3510)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홈페이지 : <http://hshuefore.co.kr/>

■ 견본주택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285-1번지

■ 분양사무소 전화 번호 : 055)345-06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